

[별표] <개정 2014.8.12>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경우	법 제39조제1항제1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나.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출입,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·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39조제1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